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 (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당첨일로부터 10년간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 여부,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하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자를 충분히 안내하고 재검증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03 예정]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또는 당사 홈페이지[www.hillstate-elife-mj.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원(문정동136번지 일원 재건축정비사업)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동, 총 1,265세대(조합원분 888세대, 임대주택 70세대, 보류지 8세대 포함) 중 일반공급 2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예정 : 2024년 09월 예정(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총 26세대(기관별 배정세대수 아래표 참고)
 -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2. 기관별 배정세대수

주택형		49A	49B	59A	59B	74A	74C	74D	74E	74F	합 계
장애인	서울	1(5)	2(10)	-	1(5)	-	-	-	-	-	4(20)
	인천	1(5)	1(5)	-	1(5)	-	-	-	-	-	3(15)
	경기	1(5)	2(10)	-	-	-	-	-	-	-	3(15)
	소계	3(15)	5(25)	0	2(10)	0	0	0	0	0	10(50)
국가유공자 등		1(5)	1(5)	-	1(5)	-	-	-	-	-	3(15)
장기복무 제대군인		1(5)	2(10)	1(5)	-	-	-	-	-	-	4(20)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1(5)	2(10)	-	1(5)	-	-	-	-	-	4(20)
중소기업 근로자		1(5)	1(5)	1(5)	-	-	-	1(5)	1(5)	-	5(25)
합계		7(35)	11(55)	2(10)	4(20)	0	0	1(5)	1(5)	0	26(130)

※ () 괄호 안 숫자는 예비추천자입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및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분양 일정(예정)

구분	예정일자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23년 11월 03일(금)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당사 홈페이지(www.hillstate-elif-mj.co.kr)
사이버건본주택 개관	2023년 11월 03일(금) 예정	- 사이버건본주택 운영 예정 / 주택홍보관 방문 불가 - 당사 홈페이지(www.hillstate-elif-mj.co.kr)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3년 11월 13일(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인터넷 접수 - 단,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접수 가능합니다.
당첨자발표	2023년 11월 22일(수)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상기 일정은 업무 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인증서**, ④ **KB국민인증서**, ⑤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마감시간인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 접수중이라도 접수가 종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4.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기본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만 공급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 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단,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예치금)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저축 구비 여부

구분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필요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 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인 경우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하거나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 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 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대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 등을 시행일 이후 매매 등으로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가능)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제외) •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내에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 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주택의 동·호배정은 동별·층별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주택형별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당첨 동·호수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동·호수 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특별공급 당첨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통장을 사용한 경우 재사용 불가, 재당첨 제한기간 중 당첨제한 등)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당첨자 발표일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가능합니다. (개별통지 불가, 본인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가 있는 경우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 불가]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통보한 사항(주택형 등)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 공급금액, 재당첨 제한기간, 전매제한기간 및 의무거주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 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부적격자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며, 이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와 무관하오니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타입별 평면에 대해서는 모집공고 이후 당사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www.hillstate-elifemj.co.kr)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1회 이상 공급 가능)

5. 문의사항

대표번호	1600-4990
홈페이지	www.hillstate-elife-mj.co.kr

6. 위치도

■ 현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원

